

행정자치부

시정요구

제 목 환경분야 법정계획 미수립

기 관 명 부산광역시, 서구, 동래구, 중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

내 용

1.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 미수립(본청 ○○○○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수립하되,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질병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관할구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국 ○○○○과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같은 법 시행일인 2005. 2. 10. 이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세부계획을 수립(세부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2016. 7월 ~ 2017. 7월))하지 않고 있다.

2. 건설폐기물 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미수립(본청 ○○○○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재활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재활용기본계획에 따라 전년도 건설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전년도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순환진흙 및 순환토사의 생산과 공급 실적,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당해 연도 세부추진계획이 포함된 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국 ○○○○과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관할구역의 “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함에도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에 걸쳐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2014년 이전은 수립)하지 않았다.

3. 환경보전계획 미수립(서구, 동래구)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계획을 확정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동래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해당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에도 서구 ○○○○국 ○○○○과는 2010. 12. 31. 환경보전계획(2011~2015년 계획)을 수립·시행한 이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동래구 ○○○○국 ○○○○과는 2009. 10월 환경보전계획(2010~2014년 계획)을 수립·시행한 이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4.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미수립(중구, 동래구, 북구, 연제구, 수영구)

「폐기물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

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관할 구역의 인구, 주거 형태, 산업 구조·분포 및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 재원의 확보 계획 등을 포함한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국 ○○과, 동래구 ○○○○국 ○○과, 북구 ○○○○○국 ○○○○과, 연제구 ○○○○국 ○○○○과, 수영구 ○○○○국 ○○○○과는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같은 법 시행일인 1991. 3. 8. 이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는

[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을 수립하시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당해 연도 세부추진계획이 포함된 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시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동래구청장은

[시정]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동래구청장, 북구청장, 연제구청장, 수영구청장은

[시정]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